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' 23년 9월 시행 예정인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시설 설치·운영 및 위탁의 근거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이에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공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현행 ‘청년활동지원센터’와 ‘청년허브’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을 통합하고 ‘서울광역청년센터’로 명칭을 변경하며,

둘째, 광역청년센터의 조례상 기능 통합 및 정비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